**제2차 총회**

* **개요**

|  |  |
| --- | --- |
| 기간 | 1998-10-20 ~ 1998-10-22 |
| 장소 | 일본국 > 토야마현, 토야마시 |
| 주관 | 일본국 > 토야마현, 토야마시 |
| 참가 | 5개국 24개 자치단체 |
| 중화인민공화국 | 랴오닝성, 산둥성 |
| 일본국 | 아오모리현, 야마가타현, 니이가타현, 토야마현, 이시카와현, 후쿠이현, 교토부, 효고현, 돗토리현, 시마네현, 야마구치현 |
| 대한민국 | 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 |
| 몽골국 | 투브아이막 |
|  | 러시아 연방  | 사하(야쿠티야)공화국, 연해변경주, 하바롭스크변경주 |
|  | \*옵져버참가 | 극동자바이칼협회 |

* **내용**
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
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 | **▷ 헌장 개정안 처리**•회원범위 확대 - 헌장 제4조(회원의 범위)에 ‘몽골' 삽입 •경제통상, 문화교류, 환경, 방재, 일반교류 등 5개 분과위원회 설치 •연합지원기관 조항 신설 |  |
|  |
|  | **▷‘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’ 작성** |  |
|  |
|  |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 |

|  |
| --- |
| **▷2000년 총회 개최지로 일본 효고현 결정** |

 |

 |  |
|  |

 |

 |

* **토야마 선언**

|  |
| --- |
| 1. 1998년 10월 21일 일본 토야마현에서 중화인민공화국, 일본, 대한민국, 몽골 및 러시아연방 등 관계자치 단체가 모여, <'98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회의> 를 개최했다. 이번 자치단체회의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(이하 <연합>이라고 함.) 설립 후 첫 번째 회의이며, 참석자는 지금까지의 연합활동이 평가와 함께 아시아 경제위기 등 어려운 정세에 있어 동북아시아지역의 발전과 평화를 위해, 경제통상,문화교류,환경,방재 등의 과제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교환과 협의를 나누었다.  |
|   |
| 2. 경제, 정보,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, 지역간 협조,교류를 한층 더 깊게 하고 항만, 공항 등의 생산,교류기반의 충실, 생활환경이나 문화의 풍부함 등 다면적인 매력을 교양해가는 것이 지역의 자율적인 발전과 안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. 참석자는 지금까지 동북아시아지역의 각 자치제가 오랜 시간을 거쳐 쌓아온 교류,협력의 실적을 근거로 다양한 네트워크형성을 도모하여, 이 지역에 있어 보다 나은 발전과 안정을 목표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, 각종 교류협력사업 등을 추진해 가기 위한 체제를 정비했다.  |
|   |
| 3. 참석자는 이런 공통인식과 <’93 시마네회의><’93 시마네회의>,<’94 효고회의>, <’95 하바롭스크회의>, <’96 경상북도 회의><’96 경상북도 회의>의 정신을 계승함과 동시에, 경상북도에서 창설된 연합의 활동성과를 근거로 다음사항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고, 연합헌장을 개정하여, 실현을 향해 계속적으로 노력해갈 것을 확인했다.  |
|   |
| (1) 연합회원의 확대와 연합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, 연합에 몽골 및 동북아시아지역국가의 자치단체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몽골 중앙 현의 참가를 환영한다. 또한 대한민국 및 러시아연방 자치단체로부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자치단체의 연합참가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자치단체가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.  |
|   |
| (2) 자치단체 회의에서 제안되었던 프로젝트의 구체화와 효과적인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분야마다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치단체간의 제휴협력,교류사업을 촉진한다.  |
|   |
|  - 경제,통상분과위원회  |
| - 문화교류분과위원회  |
|  |